

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

[시행 2020. 7. 31.] [총리령 제1633호, 2020. 7. 31., 일부개정]

【제정·개정이유】 **제정·개정문** **전체 제정·개정이유**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유해물질의 검출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등의 해외제조업소에 대해서는 그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모든 수입식품등에 대해 정밀검사를 받도록 그 검사기간을 명확히 하고, 주류의 경우에는 그 제품명에 포함된 제조연도 또는 숙성연도 등이 다른 때에도 같은 제품명으로 보아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며, 수입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등이 「식품위생법」 또는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등에 위반되는 경우 그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법령상의 행정처분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【제정·개정문】 **제정·개정이유** **전체 제정·개정문**

●총리령 제1633호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2020년 7월 31일

국무총리 (인)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 전단 중 "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6항"을 "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7항"으로 한다.

별표 9 제2호다목3)에 다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) 별표 10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실시한다.

별표 10 제4호가목 단서 중 "포도주"를 "주류(「주세법」 제4조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)"로 한다.

별표 13 Ⅱ. 개별기준 제1호나목4)의 행정처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시정명령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 15일
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

별표 13 II. 개별기준 제11호차목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 위반란 중 "5일"을 "10일"로 하고, 같은 행정처분 기준의 2차 위반란 중 "10일"을 "20일"로 하며, 같은 호 카목2)나)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 위반란 중 "7일"을 "10일"로 하고, 같은 행정처분기준의 2차 위반란 중 "15일"을 "20일"로 한다.

별표 13 II. 개별기준 제11호타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머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파목(중전의 타목2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타. 나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외에 성분에 관한 규격 또는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한 경우			
1)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때	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	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	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
2)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때	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	영업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	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
3)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때	영업정지 5일	영업정지 10일	영업정지 20일
4)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때	시정명령	영업정지 5일	영업정지 10일

2) 1)에 따른 기능(지표)성분 외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은 경우			
가) 중금속, 잔류농약, 동물용의약품, 방사능, 곰팡이독소 또는 식중독균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때	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	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	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
나) 대장균, 대장균군, 일반세균 또는 세균 발육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때	영업정지5일과 해당 제품폐기	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	영업정지1개월과 해당 제품폐기
다) 콜레스테롤, 당, 카페인 또는 잔류용매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때	영업정지3일과 해당 제품폐기	영업정지 5일과 해당 제품폐기	영업정지 10일과 해당 제품폐기
라) 성상(性狀) 기준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때	시정명령	영업정지3일	영업정지5일

별표 13 II. 개별기준 제11호하목(중전의 파목)1)의 위반사항란 중 "금속"을 "금속(씻가루는 제외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목 2) 중 "(쥐 등 설치류 및 바퀴벌레)"를 "(설치류, 양서류,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)"로 하며, 같은 목 3) 중 "이물"을 "이물(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씻가루를 포함한다)"로 한다.

별표 13 II. 개별기준 제11호너목(중전의 거목)1)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 위반란 중 "15일"을 "10일"로 하고, 같은 행정처분기준의 2차 위반란 중 "1개월"을 "20일"로 하며, 같은 행정처분기준의 3차 위반란 중 "2개월"을 "1개월"로 한다.

별표 13 II. 개별기준 제11호너목(중전의 거목)2)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 위반란 중 "15일"을 "10일"로 하고, 같은 행정처분기준의 2차 위반란 중 "1개월"을 "20일"로 하며, 같은 행정처분기준의 3차 위반란 중 "2개월"을 "1개월"로 한다.

별표 13 II. 개별기준 제11호더목(중전의 너목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머목(중전의 러목) 중 "더목"을 "러목"으로 한다.

더.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[(제2호라목2)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]) 1) 온도 기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2)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때		영업정지 7일 시정명령	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5일
--	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별표 13 Ⅱ. 개별기준 제13호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 위반란 중 "7일"을 "5일"로 하고, 같은 행정처분기준의 2차 위반란 중 "15일"을 "10일"로 하며, 같은 행정처분기준의 3차 위반란 중 "1개월"을 "20일"로 한다.

별표 13 Ⅱ. 개별기준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, 같은 Ⅱ. 개별기준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개별기준 제16호(중전의 제15호) 중 "제14호"를 "제15호"로 한다.

15.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구매를 대행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9조	시정명령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 15일
---	--------	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

별표 13 Ⅲ. 과징금 처분 제외 대상 제3호 중 "타목3)·4) 또는 거목1)·2)"를 "파목3)·4) 또는 너목1)·2)"로 한다.

별지 제22호서식의 참고사항란 중 "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6항"을 "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7항"으로 한다.

별지 제25호서식 4쪽 중 제2쪽의 유의사항란의 다목 중 "「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의뢰규칙」에서 정하는 시험수수료액표"를 "「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·검사의뢰 규칙」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"로 한다.

별지 제35호서식 중 "128mm×182mm[보존용지(1종) 120g/㎡]"를 "210mm×297mm[백상지 또는 종절지 80g/㎡]"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0 제4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국의 선적항에서 선적하는 주류(「주세법」 제4조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)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